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기관의 장

**제2806호 2021. 8. 20.(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2호 김제 순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3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익산) ..... 10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4호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11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임실군) ..... 22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6호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3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398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 3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3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37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3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13호 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39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8. 17.(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42

**시군행정**

- 익산시 공고 제2021-206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44
- 정읍시 공고 제2021-122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45

**기 타**

- 전라북도 고창소방서 공고 제2021-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고 ..... 46
- 전라북도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1-5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 47

<b>회람</b>									
-----------	--	--	--	--	--	--	--	--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2호

## 김제 순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순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김제시(김제시 서암동 353번지)

#### 나. 조성목적

- 경제 성장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수요 충족
- 지역 소득원 개발로 인구와 산업의 지방 정착 유도
- 새만금 개발권의 배후 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다. 추진경위

- '94. 05. 19. : 공단조성에 따른 협약체결(김제시↔중소기업진흥공단)
- '95. 07. 08. : 순동지방산업단지 지정(전북고시 제1995-120호)
- '96. 05. 31. :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전북고시 제1996-175호)
- '96. 12. 30. : 조성공사 착공
- '98. 07. 03. :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98. 12. 05.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전북고시 제1998-515호)
- '99. 02. 12. : 조성공사 준공
- '99. 04. 13. :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전북고시 제1999-228호)
- '00. 11. 01. :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전북고시 제2000-376호)
- '01. 10. 20. : 김제 순동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00-376호)
- '03. 02. 10. : 김제 순동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03-34호)
- '03. 11. 21. : 김제 순동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03-335호)
- '07. 06. 01. : 김제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전라북도고시 제 2007-121호)

○'20. 07. 29. : 김제 순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20-227호)

○'21. 08. 20. : 김제 순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21-272호)

#### 라. 분양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총면적	분양계획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조성기간
계	262,061.3	186,115.6	186,115.6		'95. 7. ~ '99. 8.
산업시설구역	186,115.6	186,115.6	186,115.6		
지원시설구역	658.1				
공공시설구역	60,319.5				
녹 지구 역	14,968.1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소, m<sup>2</sup>)

구 분	입 주 업 체				면 적 (m <sup>2</sup> )			
	계	제조업	기 타	지원기관	계	제조업	기타	지원기관
합계	26	24	1	1	186,773.7	182,145.6	3,970.0	658.1
'20. 6.현재	26	24	1	1	186,773.7	182,145.6	3,970.0	658.1
향후계획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현 행	확 충 계 획
항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외항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능력 : 6선좌</li> <li>- 하역능력 : 3백만톤/년</li> </ul> </li> <li>○ 군산신항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능력 : 2~5만톤 60선좌</li> <li>- 하역능력 : 35백만톤/년</li> </ul> </li> </ul>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남고속도로 금산사 IC에서 10분거리 13km</li> <li>○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8km</li> <li>○ 김제역에서 4km</li> <li>○ 군산공항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 ↔ 서울, 제주, 부산</li> </ul> </li> <li>○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 (2003 ~ 2008)</li> </ul>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수원 : 섬진강</li> <li>○ 취수원 : 섬진광역상수도</li> </ul>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전시설 : 2개소</li> <li>○ 일반전력 : 22.9kw</li> </ul>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선수 : 82,000선</li> <li>○ 초고속통신망(매가패스)</li> </ul>	
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 : 1개소</li> </ul>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가. 관리기본계획

- 내륙 산업단지로서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의 집중 유치로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고 장차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 있는 공간 구축
- 공장을 업종별 규모별로 배치 계열화함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적극 개발 설치토록 유도
- 새만금 개발권의 배후 지원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1) 입주자격(변경)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의 기업체 및 지원기관 단, 지원기관은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입주 허용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및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 2) 입주대상 업종(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2개 분야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비고
10	식료품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3	비금속광물제품	
24	제1차 금속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 부동산 임대업

## 3) 입주제한

- 레미콘, 시멘트 제품, 도정업, 도축업종(도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에 한함) 부산물이용 사료·비료 업종,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업종 등 환경 위해 물질 사용 업종, 염색 및 가공업(소분류 174) 원피 가공업, 재생 및 특수 가공 가죽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분류 24, 단 소분류 244는 가능) 도금업, 인쇄 회로판 제조업,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하며, 또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타 입주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4) 입주우선순위

- 조성된 부지면적의 규모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입주업체를 선정 한다.
  - 첨단산업 분야의 업종
  - 지역 내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업종
  - 수입 대체효과가 크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업종
  - 공해도가 적고 주변 유희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 5) 사후관리 계획

- 입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6) 입주계약 체결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김제시)과 입주 계약을 체결
- 입주기관 및 지원기관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으로 간주 입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1) 용도별 구획 면적

##### ○ 산업단지 개요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262,061.3㎡	186,115.6㎡	658.1㎡	60,319.5㎡	14,968.1㎡

##### ○ 산업시설 구역 세부용도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용도	자원비축 시설용도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186,115.6㎡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 산업시설구역

- 공장시설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3조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 공공시설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공공시설의 건축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3) 용도별 구역평면도 : 별표 #1 참조

##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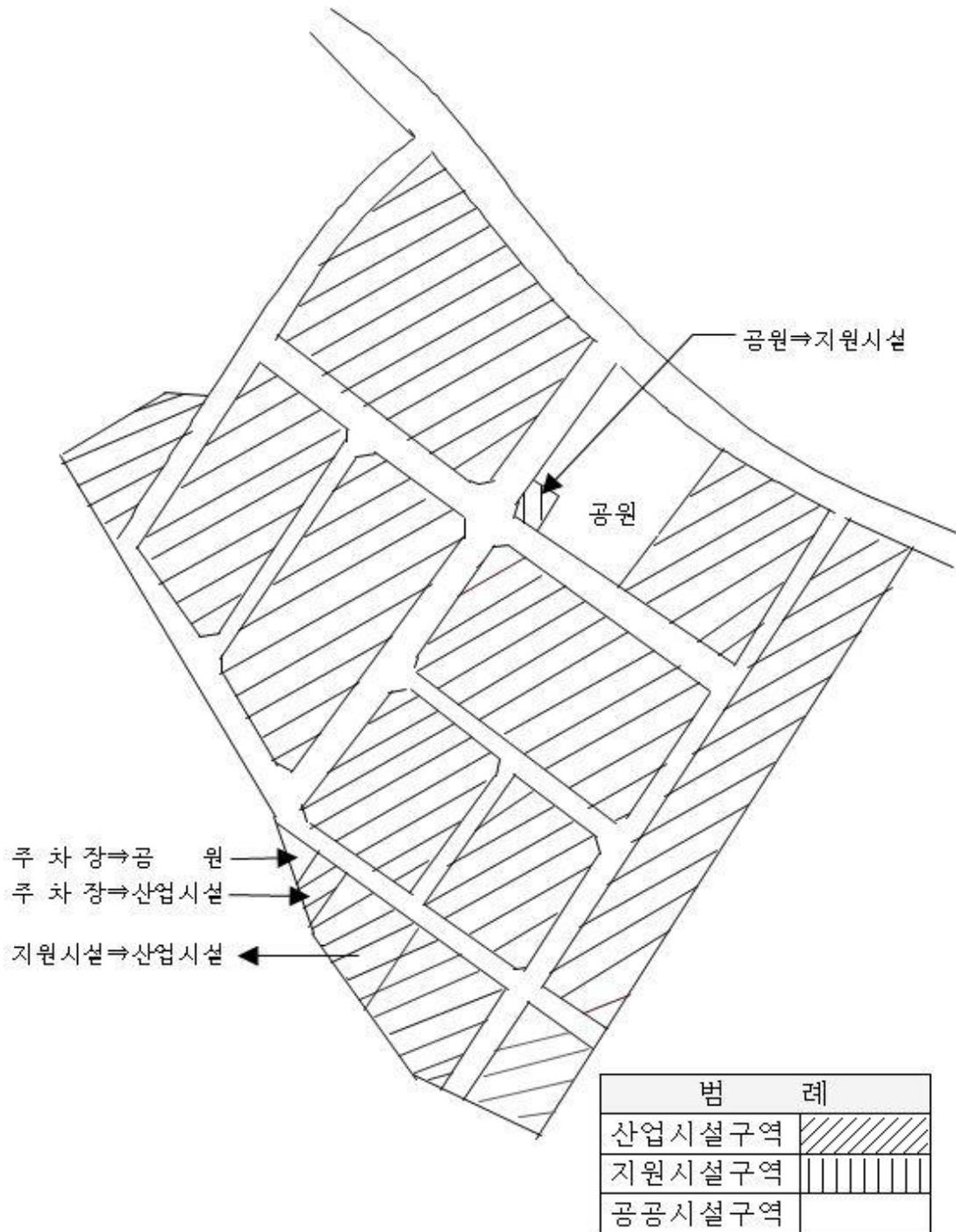
## 1)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품목분류(중분류)	면적(m <sup>2</sup> )	비고
계		186,115.6	
음 식 료	10	57,180.0	
펄프종이	17	7,200.9	
고무플라스틱	22	14,622.8	
비금속광물	23	1,649.9	
제1차금속	24	39,993.8	
조립금속	25	18,275.5	
기타기계	29	4,628.3	
전기,전자	26,28	10,962.2	
의료, 정밀, 광학, 시계	27	4,899.2	
자동차트레일러	30	22,733	
기타(RIC)		3,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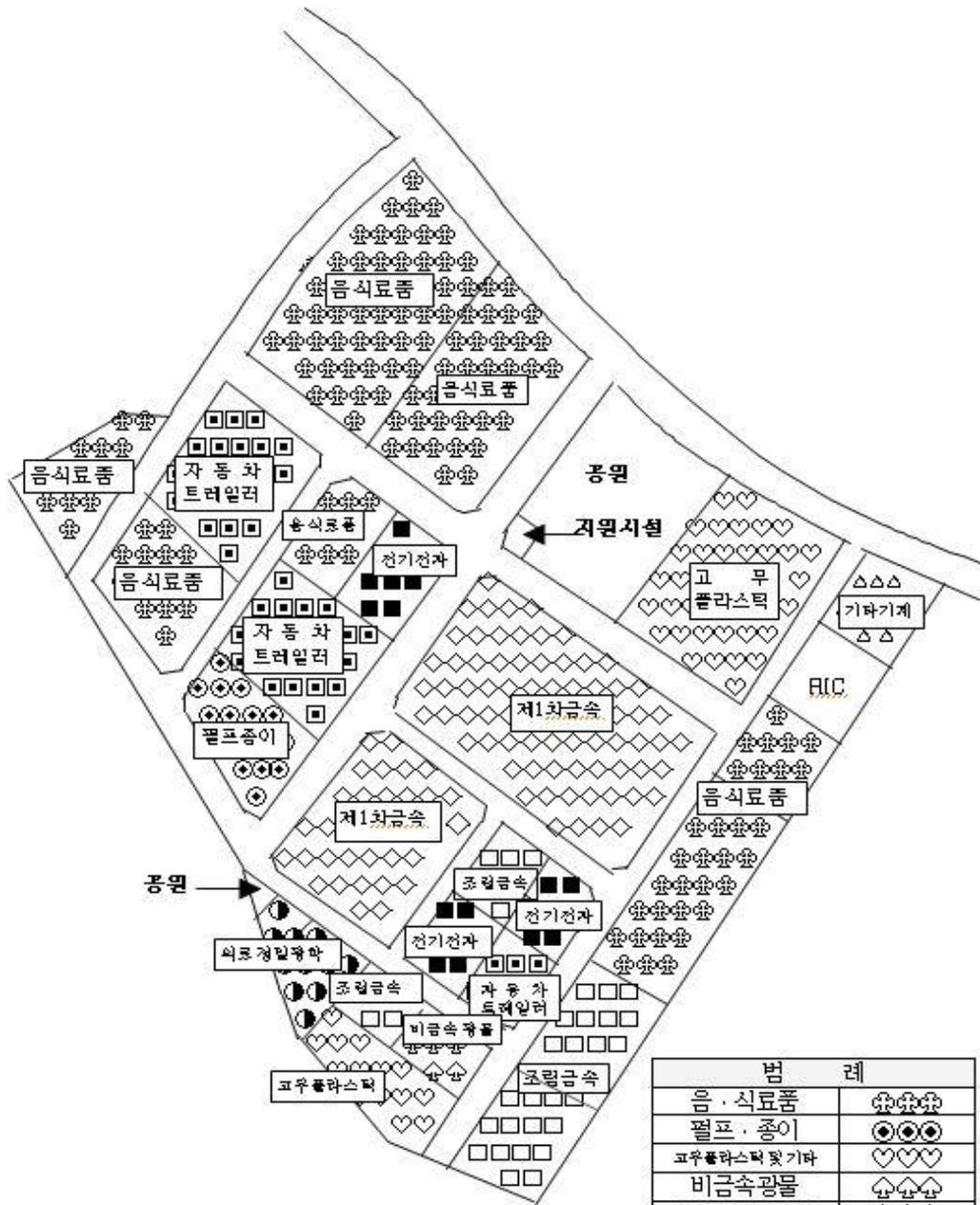
## 2) 기본방향 및 원칙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 산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로 사업계획 등에 부합되고 택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며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별표#1 용도별구획평면도



**별표# 2 업종별배치계획도**



범례	
음·식료품	☺☺☺☺
펠프·종이	⊙⊙⊙
고무플라스틱및기타	♡♡♡
비금속광물	☼☼☼
제1차금속및기타	◇◇◇◇
조립금속 및 기타	□□□
기타기계 및 기타	△△△
전기·전자	■ ■ ■
의료정밀과학	⊙●●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기타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3호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익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익산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0	익산시	임상동지구	익산시 임상동 297-2번지 일원	
		오산지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33-4번지 일원	
		신지2지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9-25번지 일원	
		용포1지구	익산시 용포면 용포리 488-1번지 일원	

###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익산시	<b>합 계</b>	<b>1,741</b>	<b>920,836</b>	<b>1,796</b>	<b>913,601.5</b>	<b>55 (3.2%)</b>	<b>△7,234.5 (-0.8%)</b>	
	임상동지구	334	134,399	338	130,534	4 (1.2%)	△3,865 (-2.9%)	
	오산지구	638	384,153	645	381,194	7 (1.1%)	△2,959 (-0.8%)	
	신지2지구	410	177,513	411	177,579	1 (0.2%)	66 (0.1%)	
	용포1지구	359	224,771	402	224,294.5	43 (12.0%)	△476.5 (-0.2%)	

- ⑤ 변경사유 : 필지 추가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변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익산시청 이 세 립(063-859-5205)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4호

###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 I. 산업단지 개요

##### 1. 산업단지 개요

- 명 칭 :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김제시 백산면 일원
- 지정면적 : 2,977,810.8㎡

##### 2. 관리기관 : 김제시장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 사업시행자 : 지앤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석중(김제시 백산면 백산로 368)

##### 3. 조성목적

-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신산업입지 수용에 대응하여 도시산업기능을 강화
- 전라북도 연담도시(전주~익산~군산~김제)권 T자형 산업벨트 전략의 중심축 구축
- 생산·주거·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 개발을 도모

##### 4. 추진경위

- '07. 08. 29.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08. 01. 3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
- '08. 05. 29. :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
- '08. 09. 05. : 산업단지 지정승인

- '08. 12. 19. : 환경영향평가 협의
- '09. 01. 06.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09. 01. 30. : 교통영향평가심의 완료
- '09. 04. 24. :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전북고시 제2009-119호)  
※ 변경사항 :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10. 08. 16. : 공사 착공
- '10. 12. 17.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고시 (전북고시 제2010-337호)  
※ 변경사항 : 자유무역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11. 01. 0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북고시 제2011-1호)
- '13. 02. 15.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전북고시 제2013-37호)  
※ 변경사항 : 도로 및 녹지면적 축소
- '13. 10. 18.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전북고시 제2013-245호)  
※ 변경사항 : 주요 유치업종 변경
- '14. 08. 01.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전북고시 제2014-200호)  
※ 변경사항 : 확정측량 면적 반영, 사업기간 변경, 도로(1개노선) 폐지 등
- '15. 05. 29. : 산업단지 (부분)준공인가 공고(전북공고 제2015-743호)
- '15. 09. 1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전북고시 제2015-192호)
- '16. 10. 1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전북고시 제2016-199호)
- '17. 08. 04.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전북고시 제2017-155호)  
※ 변경사항 :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사업비,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 '19. 04. 12. : 준공인가 완료
- '19. 12. 2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전북고시 제2019-327호)  
※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 '20. 09. 08. :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0-264호)
- '21. 08. 20. :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274호)

## 5. 분양계획

(단위 : m<sup>2</sup>)

구 분	총면적	분양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663,563.5	1,235,260.2	2008 ~ 2016.06	지엔아이 주식회사
산업시설	1,183,917.7	1,183,917.7		
지원시설				
공공시설	396,688.3	51,342.5		
녹지시설	82,957.5			

## 6. 입주계획

(단위 : m<sup>2</sup>)

입주업체수				면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117	100	15	2	1,235,260.2	1,183,917.7	-	51,342.5

※ 분양결과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7. 입지여건

시설명	2019. 10월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전 력	· 공급능력 : 전력 140,059kW	2010~2016	-	-
통 신	· 김제전화국 : 5,506회선	2010~2016	추가공급가능	한국통신
용 수	·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	2010~2016	추가공급가능	김제시
도 로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20km · 서해안 고속도로 서김제IC에서 3.7km · 지방도702호 및 시도5호선 교차분기	2010~2016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L=4.93km, 4차선)	김제시
철 도	· 호남선 김제역에서 11km	-	-	-
항 만	· 군산외항(45km) 이용 - 집안능력 : 22선식 - 하역능력 : 3백만 톤/년	-	-	-
항 공	· 군산공항(45km) - 군산 ⇄ 서울, 제주, 부산	-	-	-

##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

-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및 지원시설용지 밖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 관리기본방향

-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 활동 전개로 생산 활동 지원
-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 복지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 3.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단위 : m<sup>2</sup>,%)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663,563.5	1,183,917.7	-	396,688.3	82,957.5
(100.0)	(71.2)	( - )	(23.8)	(5.0)

※ 관리대상면적 제외 : 1,314,247.3m<sup>2</sup>

- 자유무역지역 991,720.7m<sup>2</sup> 및 자유무역지역 외 지원시설용지 일원 322,526.6m<sup>2</sup> 제외

####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3조 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2)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 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설치하는 해당 공공시설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 (3) 녹지구역 : 녹지(공원)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 다.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붙임 별첨 #1

##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 가.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m<sup>2</sup>)

업종별	품목종류(중분류)	면적(m <sup>2</sup> )	구성비(%)
합계		1,183,917.7	100.0
식료품	10	211,601.8	10.9
목재 및 나무제품	16	5,420.2	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7	13,298.0	0.7
인쇄 및 기록매체	18	1,662.2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19	6,612.0	0.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11,568.0	0.6
고무제품	22	32,564.3	1.7
비금속 광물	23	29,760.1	1.5
1차금속	24	86,868.4	5
금속가공제품	25	114,926.9	5.9
전자부품	26	3,306.9	0.5
전기장비	28	21,987.4	1.6
기타기계및장비	29	43,714.8	20.2
자동차및트레일러	30	493,875.4	45.1
기타운송장비	31	6,607.1	0.3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52	53,102.5	2.7
연구시설	70	42,976.6	2.2
사업지원서비스업	75	4,065.1	0.2

## 나. 업종별 배치기준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 산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 등에 부합되고 택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 산업단지 구성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 공장 부지 분양 시 실수요자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

##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별첨 #2

### Ⅲ. 산업단지 입주관리계획

#### 1. 입주대상업종

#####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3개 분야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비 고
10	식료품	
16	목재 및 나무제품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단, 뿔감 및 연료용 압축 펄릿 제외
18	인쇄 및 기록 매체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2	고무제품	
23	비금속 광물	
24	1차금속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28	전기장비	
29	기타기계및장비	
30	자동차및트레일러	
31	기타운송장비	
5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70	연구시설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 부동산 임대업

#### 2. 입주제한

가. 특정 수질·대기 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입주 제한

※ 위 입주제한 업종 외 인근 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나. 비금속광물제조업(23) 중 주변 지역 환경에 지장을 주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다. 기타 환경에 지장을 주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라.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전북고시 제2013-245호(2013.10.18.)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입주자격(변경)

####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및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 4. 입주 우선순위

- 주요 유치업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기업
-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저공해업종 영위 기업
- 시에서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사업(농기계,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5.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IV.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1. 설치계획 : 해당없음

#### V. 사후관리계획

##### 1. 목 적

「산업집적법」, 산업단지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효율적 관리 도모

##### 2. 세부관리계획

###### 가.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 시는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분양 한도는 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범위 이내로 함
-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산업용지의 분할 등)규정에서“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단,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분양받은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지 경계부가 보도와 접하는 등 수림대가 필요한 경우에 단지 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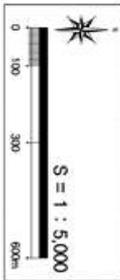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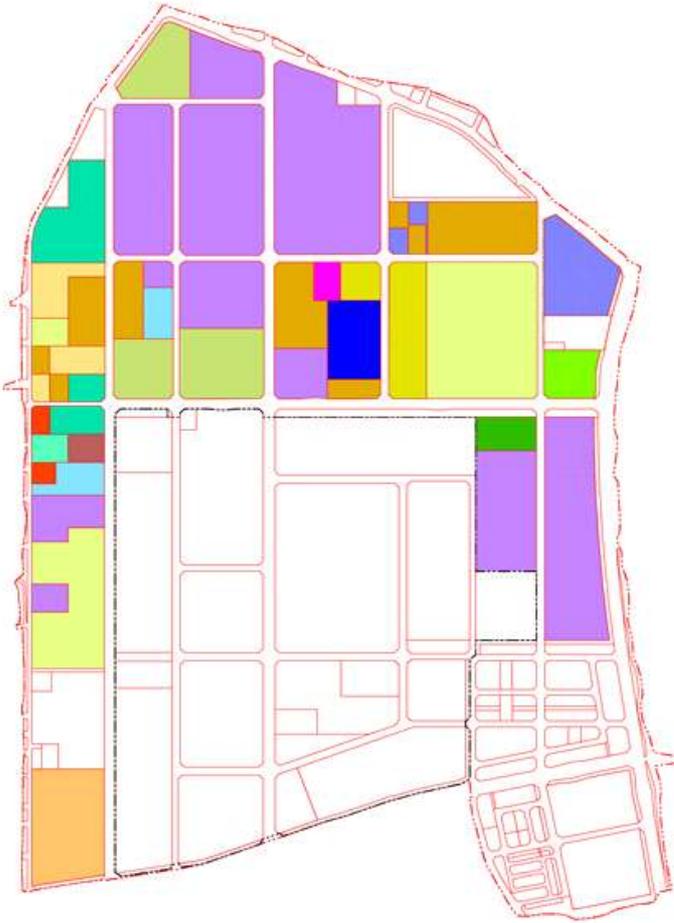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파출소, 소방서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붙임2 : 업종별 배치계획도



업종별 배치계획도

범	
례	
	구 역 계 (산업단지)
	구역계 (자유무역지역)
	10. 신재생 에너지
	19. 바이오 및 연료 및 석유화학
	20. 화학물질 및 용제화학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3. 비금속 광물
	24. 1차 금속
	25. 중속가공제품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촬영 및 통신기기
	28. 정유업
	29. 기타가공 및 장비
	30. 자동차 및 부품업
	31. 기타제조업(기타 제조업)
	52. 항공 및 우주관련산업
	70. 연구시설
	17. 철도, 중이 및 용아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복사 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동력 및 내연기관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5. 신소재제조업
	10. 신재생에너지 및 용제화학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촬영 및 통신기기
	29. 기타가공 및 장비
	28. 정유업
	30. 자동차 및 부품업
	20. 화학물질 및 용제화학 제조업
	28. 정유업, 컴퓨터, 영상, 촬영 및 통신기기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5호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임실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임실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1	임실군	오수지구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1-4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임실군	오수지구	1,457	493,924	1,458	491,297	1 (0.1%)	△2,627 (0.5%)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임실군청 강 훈(063-640-2134)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76호

##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전주시(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변경)

나. 산업단지 면적 : 687,000㎡(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일원)

### 다. 조성목적

- 산업용지난 해소
- 산업화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라. 추진경위

- 1984. 11 . 8. 전주제2공단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 1987. 2. 6.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 1992. 11. 17. 전주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 (전북도 고시 제92-294호)
- 1993. 6. 18. 전주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북도 고시 제93-295호)
- 1994. 9. 2. 전주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북도 고시 제94-192호)
- 1997. 8. 4. 전주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북도 고시 제97-284호)
- 2001. 10. 5. 전주제2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전북도 고시 제01-284호)
- 2020. 10. 23. 전주제2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0-307호)
- 2021. 8. 20. 전주제2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276호)

### 마. 분양현황

	총면적 (천㎡)	분양면적(천㎡)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687	558	-	-	-	558	'84~'87	진주시
산업시설구역	531	531	-	-	-	531		
지원시설구역	27	27	-	-	-	27		
공공시설구역	129	-	-	-	-	-		
녹지구역	-	-	-	-	-	-		

### 바. 입주현황(변경)

구분	입주업체수(개소)			면적(천㎡)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계	28	2	30	531	27	558

### 사. 입지여건(변경)

시설명	내용	비고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2km),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39.8km) 이용 (서울 240km, 부산 322.9km, 대구 219.7km, 군산 47km, 남원 59km, 정읍 46km)</li> <li>국도 : 1번(목포↔전주↔신의주), 27번(군산↔전주↔고흥)</li> </ul>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남선 전주역(1.9km), 익산역(25.3km)을 통해 전라선, 군산선 연결 (서울 280.2km, 대전 107.7km, 여수 173.6km)</li> </ul>	
항만 및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공항(50km) 이용</li> <li>군산항(48km) 이용 : 2~5만톤급 선박접안, 화물하역능력2,813천톤, 화물접안 능력 6선좌</li> </ul>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용수 : 65천톤/일</li> </ul>	

시설명	내 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수 : 53천톤/일</li> <li>-용수원 : 팔복정수장 및 팔복배수지에서 공급</li> </ul>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변전소 : 1,500KVA</li> </ul>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전화국 : 20,000회선</li> </ul>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처리시설</li> <li>-하수처리량 : 303천톤/일</li> </ul>	

## 2.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 가. 관리기본방향

- 토지이용고도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관리
- 산·학·연이 연계된 기술·연구집적 및 생산공간 제공
-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시설 확충

### 나. 입주관리 계획

#### 1) 입주대상 업종(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단, 시멘트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도축업종은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 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허용함.)

#### 2) 입주자격(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업(여객 운송업은 제외한다),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및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 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 우선순위

- 가) 고부가가치 및 첨단업종
- 나)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비교우위가 높은 업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 라)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종

4) 입주계약체결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인 전주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5) 분양한도

-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에 의한다.

## 다. 용도별 구역계획

##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천㎡)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687 (100%)	531 (77.3%)	27 (3.9%)	129 (18.8%)	-

## 2)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구분	세 부 용 도	면적(천㎡)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531

## 3)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3조 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축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나) 지원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등의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장정보제공·에너지이용효율개선·에너지공급·노사관계증진·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지정된 건축물

##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단,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함

## 라) 녹지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4) 용도별 평면도 : 붙임 1

## 라.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 1)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업종분류	면적(m <sup>2</sup> )
합 계	53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5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3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9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아파트형공장	
6811. 부동산임대업	

※ 단,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 2) 배치기준

-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업종별 환경영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양도 및 임대입주 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허용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2

**마.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 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처리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① 공장설립지원

-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상 인·허가 업무 대행
-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통보

② 생산활동 지원

- 각종 금융자금 알선지원
- 취업알선을 통한 입주기업체 고급인력 확보 지원

③ 수출활동 지원

- 입주기업체의 생산제품 대외 홍보활동 강화
- 국제전시회를 통한 입주업체 생산제품 홍보
- 인터넷을 통한 기업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④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단지 내 종합지원센터를 유치,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
- 근로자아파트 운영으로 근로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모범근로자 표창 등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시행
- 전주제2산업단지 내 운동시설을 확보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⑤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파악, 정부에 건의
- 정부 및 관련단체의 산업기술개발 정보 입수

⑥ 산업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 노사화합과 노동관계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 사) 지원시설 설치계획

용도구분	시설명	업체수	면적(m <sup>2</sup> )
합 계		2	27,300
생산활동지원시설	차량운송기능	1	24,656
후생복지지원시설	청소년회관	1	2,644

## 아) 아파트형 공장건설

## ① 사업목적

- 전북지역내 중소기업의 입지를 해소하고 생산공간을 제고,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 공장의 효율화 및 행정지원의 집중화로 생산원가 절감

## ②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5,326m<sup>2</sup>(1,611평)
- 건물면적 : 16,732m<sup>2</sup>(5,092평)
- 층 수 : 지상 5층, 지하 1층
- 사업기간 : '96. 1. ~ '97. 10.
- 입주업체 : 30 ~ 40개 업체(입주희망면적으로 공급)

## ③ 입주업종 및 입주요건

- 입주대상업종 :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적합한 전업종(근린생활시설)
- 입주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 입주제한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 환경관련법상의 허가(규제) 대상
  -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시설이 입주하고자 하는 층의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및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하여 지정된 대기업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자
  - 최근년도 부채비율이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고, 최근년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공장의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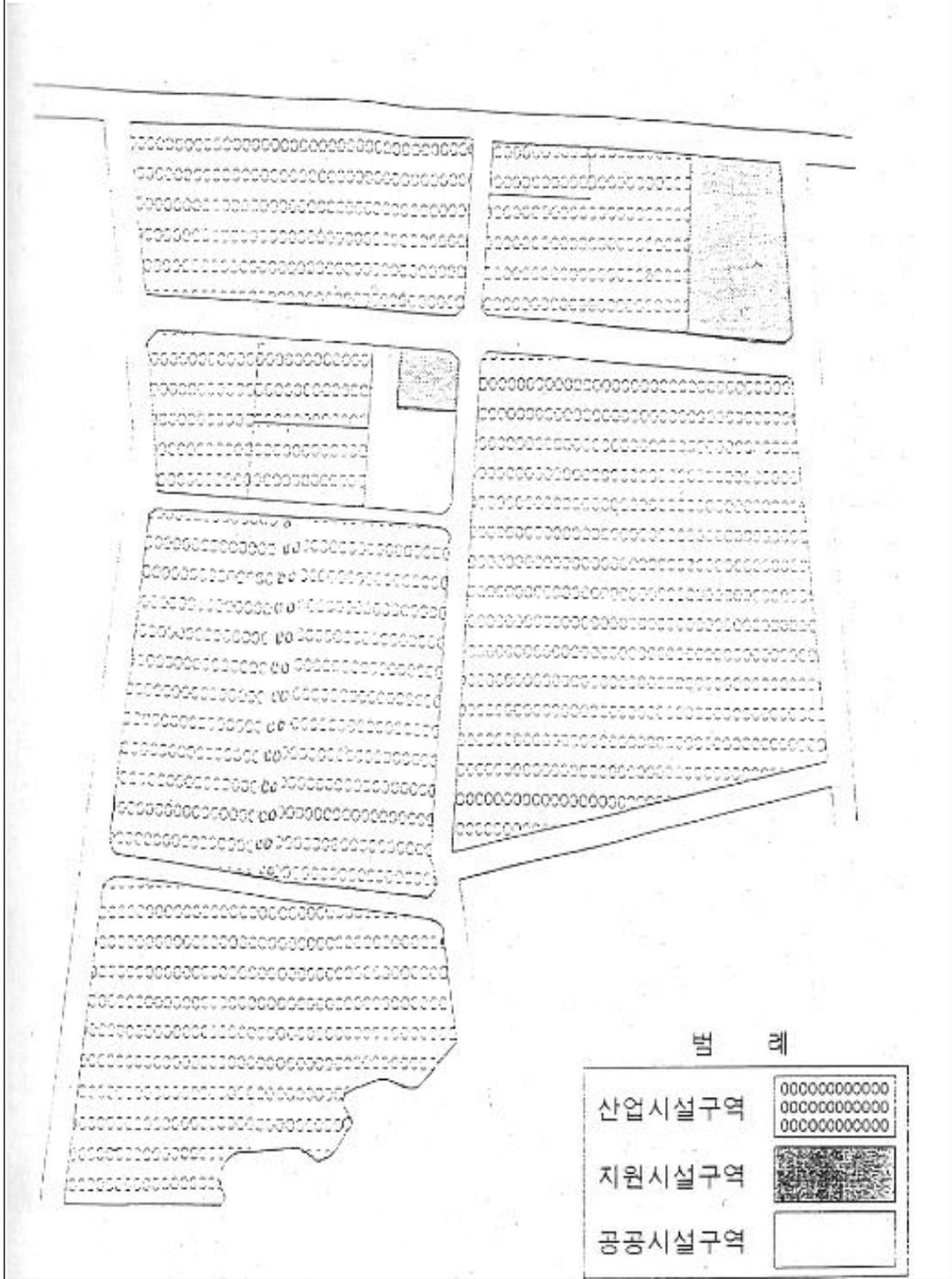
○ 층별 입주업종

1 층	기계, 금속, 가공, 인쇄, 기타, 중량기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2 층	기계, 금속, 가공, 인쇄, 기타, 중량기계
3 층	섬유, 봉제, 잡화, 전기, 전자조립, 엔지니어링, 기타 경량기계
4 층	
5 층	S/W개발형, 연구개발형, 엔지니어링 업체, 기타제조업
지하	식 당

※ 층별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 입주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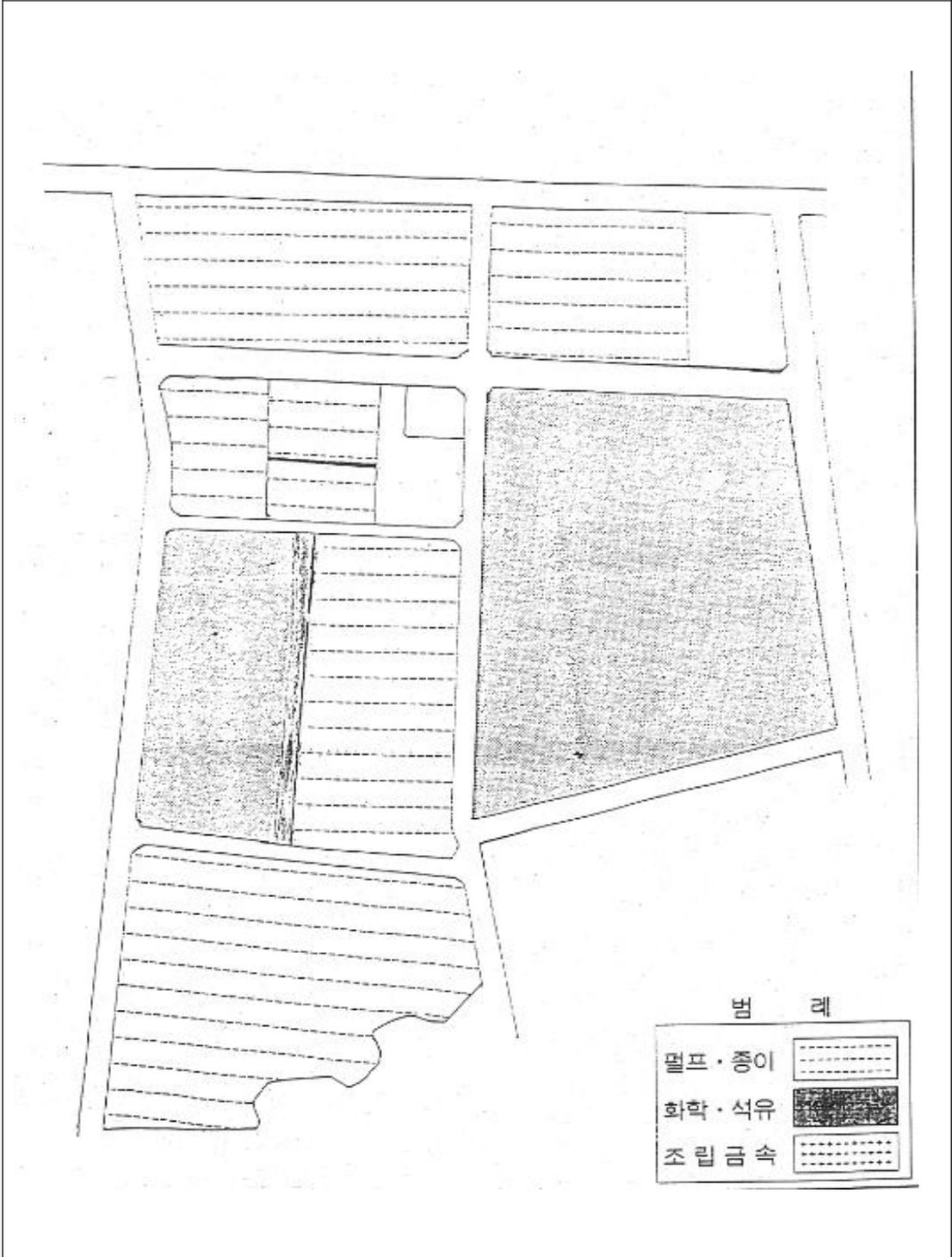
붙임 1

용도별 구획평면도



붙임 2

업종별 배치 계획도



전라북도 공고 제2021-1398호

##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말소된 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  
개발업 폐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상호 및 대표자	말소연월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주)한울종합건설 이현우	2021.8.12.	전북190001 (210111-0085558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7, 602호 (효자동2가, 갤럭시 빌딩)	사업실적 부진 및 경기 하락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2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전라북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 수행
3.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4. 대상업체 및 처분 세부내역

업체명 (대표자)	등록분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처분내용
(유)가온기술 (김미경)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전북 제49호)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53 (210114-0108578)	영업정지 45일 (2021.8.18. 2021.10.1.)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3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전라북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 수행
3.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4. 대상업체 및 처분 세부내역

업체명 (대표자)	등록분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처분내용
㈜당찬건설진단 (홍민기)	교량 및 터널 (전북 제59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61, 201호 (214211-0007001)	영업정지 45일 (2021.8.18. 2021.10.1.)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04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전라북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 수행
3.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4. 대상업체 및 처분 세부내역

업체명 (대표자)	등록분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처분내용
(유)청연알에프 (김일국)	교량 및 터널 (전북 제96호)	전라북도 김제시 서낭당길 117 (210114-0101035)	영업정지 45일 (2021.8.18. 2021.10.1.)

전라북도 공고 제2021-1413호

## 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에 따라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직원가옥’, ‘익산 이리초등학교 구 본관’, ‘익산 황등초등학교 별관’, ‘원불교 익산성지 송대’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8월 20일

1. 공 고 명 : 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 가. 대상문화재

번호	명칭	수량	규격·면적	제작(건립)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1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직원가옥	1동	69.3㎡	일제강점기	(소유자) 해움문화재연구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295-16번지
2	익산 이리초등학교 구 본관	1동	1,004.4㎡	1936년	(소유자)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49-1번지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60-2
3	익산 황등초등학교 별관	1동	720.33㎡	1957년	(소유자)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07-1번지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650-1
4	원불교 익산성지 송대	1동	26.6㎡	1943년	(소유자) 원불교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 나. 등록예고 사유

#### ○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직원가옥

- 정읍 화호리는 일제강점기 대규모 농장이 조성되면서 전통적인 농촌마을과 다수의 일본인 농장 관련 건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지니고 있다. 구 일본인 농장직원가옥은 ‘一’자형 평면으로 정면 포치 부분인 현관으로

진입하면 현관마루, 방, 부엌 등이 일본식 공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은 우진각 지붕이며 계야(달개지붕, 下屋)가 상하로 만들어진 이중지붕으로 처리되어 있고, 입면은 코마이카베(진벽, 小舞壁)와 시타미(미늘판자벽, 下見), 타테구(창호, 建具) 등으로 시공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대 후반에 현재의 위치로 이축된 것으로 추정됨. 일제강점기 일본식 건축양식과 재료가 반영되어 있어 일본인 농장 또는 가옥을 연구하는데 건축학적 가치가 있음.

#### ○ 익산 이리초등학교 구 본관

- 1915년 이리공립보통학교로 개교 후 1946년 이리국민학교로 개명, 1996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36년에 당시 본관을 연와조 2층 건축물로 신축하였으나 한국전쟁 때에 부분적으로 전소되었다가 1955년 복구공사, 1988년 다목적 강당으로 재건축 후 공간 활용의 변화를 겪다가 지금은 동창회관, 역사관, 다목적실로 활용되고 있음. 이 건물은 외관과 평면뿐만 아니라 철근 콘리트와 별들조를 함께 사용한 구조이며, 내부 바닥 슬래브와 보 등 근대 초기의 건축물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익산 지역의 근대 초등교육시설로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높음.

#### ○ 익산 황등초등학교 별관

- 익산 황등초등학교는 1927년 황등보통학교로 개교 후 1971년 황등남초등학교가 분리되었고 1996년에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별관은 1957년에 건립되어 교실로 사용되다가 2003년 내부를 변형하여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관은 一자형 평면에 석조와 조적조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로 지붕을 구성하였다. 건물의 외벽은 당시 초등학교 건물로는 최초로 이 지역의 특산물인 황등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로 건축되었다. 주 출입구는 석재를 기둥 형식으로 만들고 박공면을 장식적으로 구성하는 등 195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석조 교사의 건축 특성이 잘 보존되어 근현대 교육 시설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음.

#### ○ 원불교 익산성지 송대

- 원불교 익산 성지에는 본원실을 비롯하여 건물 8동과 석물 2기가 2005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송대는 소태산 대중사의 휴양과 정전 집필을 위해 1940년에 지은 건물이라 전하며 1949년에는 원불교 교단의 기관지인 『원광』의 편집실로 사용, 2005년 건물 안쪽을 수리하여 기도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송대는 부분적으로 일본식 주택의 기법이 절충된 목조 구조의 한옥건물이다. 3칸의 기와집으로 정면에는 미닫이 유리문을 설치하

였고 우진각지붕의 시멘트 기와로 구성되었는데 최근 동기와로 교체되었다. 송대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휴양과 집필을 위해 지은 건물로 원불교의 초기 역사를 담고 있어 익산 성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역사를 갖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로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 주소: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전화 : 063-859-5791 / 전송 : 063-859-5069

다.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 전화 : 063-539-5185 / 전송 : 063-539-6508

##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8. 17.(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1-87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p>○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음.(8. 2.)</p> <p>*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p> <p>** '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한 기반 여건 조성, '25년부터 지역사회 정착 지원(현 거주시설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 전환,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등)</p> <p>- 탈시설 장애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라며,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 및 기능 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장애인복지과 / 협조 : )</p>
2021-88	하이퍼루프 관련 사업 공모 대응 및 추진상황 보고	<p>○ 국토교통부에서 '하이퍼루프' 관련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그 동안의 추진 흐름 및 동향을 파악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도로교통과 / 협조 : )</p>
	당면·현안업무	<p>○ (주요 현안업무 추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로그램 사업 추진, 업무협약 사후관리, 귀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li> <li>· (홀로그램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메타버스 동향 등 보고</li> <li>· (업무협약) 협약 이행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li> <li>· (귀농귀촌) 현 정책 분석을 통해 성공적 추진방안 마련</li> <li>· (지역사회 ESG 업무협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총괄부서 중심으로 추진 검토</li> <li>·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노선) 국토부의 공모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li> <li>· (대학 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li> <li>·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대응)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재단 등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 )</p> <p>○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환경과 개발의 공존 논리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7. 26.)에 따라 새만금 매립,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등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li> </ul>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새만금 개발사업 및 태양광사업, 국제공항, 노을대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b>환경과 개발이 공존</b>할 수 있는 <b>논리</b>를 마련하기 바람. (주관 : 새만금개발과 / 협조 : 도로교통과, 공항하천과)</p>
	당면·현안업무	<p>○ (코로나19 대응 철저)</p> <p>- 본격적인 <b>대규모 접종</b>(18~49세 대상자 70만여명) 시행 관련 <b>백신접종 독려</b> 및 <b>홍보</b>를 통해 신속하게 <b>백신접종</b>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b>백신 예약·보관</b> 등 백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b>추석 명절</b>을 맞아 <b>제사와 벌초</b>를 위해 타지역 거주자의 고향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b>의용소방대원의 벌초 대행</b> 지원을 <b>검토</b>하고, <b>산림조합의 벌초대행사업</b>을 적극 <b>홍보</b>하는 등 방역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주관 : 감염병관리과, 방호예방과 / 협조 : 산림복지과)</p> <p>○ (우리도 파견 협력관·자문관 등 소통 협력 강화)</p> <p>- 국회, 기재부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b>협력관(자문관) 8명*</b>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협력관과 업무 교류 차원을 넘어서 <b>실질적인 도정지원</b>이 되도록 <b>소통·협력을 강화</b>하여 <b>국정감사, 국가예산 심의</b> 등 <b>현안 해결</b>에 도움이 되는 <b>소통 창구 역할</b>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기 바람.</p> <p>* 국회협력관(국회), 경제협력단장(기재부), 국토협력관(국토부), 산업정책협력관(산업부), 경제분석자문관(금감원), 금융자문관(한국은행), 지역뉴딜전문위원(산업은행), 방제기상지원관(기상청) (주관 : 관련 실·국 / 협조 : )</p>

익산시 공고 제2021-2069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8월 20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익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나. 명 칭 : 익산시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 2.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비고
익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사업	익산시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번지 일원	사업면적 : 16,203㎡ 건축면적 : 232.75㎡ 건축연면적 : 460.8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익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정읍시 공고 제2021-1228호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 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 합니다.

정 읍 시 장  
2021년 8월 20일

###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가. 공간시설

#####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전	변경	변경후		
신설	-	광장	경관광장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191-2일원	-	증) 11,725	11,725		

#####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장	·위치: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191-2일원 ·면적: 11,725m <sup>2</sup>	· 동학농민혁명(교부봉기) 발원지에 대한 상징성 부여 및 행사공간마련과 주민편익시설계획을 통해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 “실음생략”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신문게제일 2021. 8. 20.)

4. 열람장소 : 정읍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5. 의견제출 :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창소방서 공고 제2021-1호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를 다음과 같이 관(도)보에 공고합니다.

고 창 소 방 서 장  
2021년 8월 20일

▣ 공고사항

1. 대 상 명 : 석정힐CC클럽하우스
2. 영 업 주 : 서 은 회
3. 영업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92
4. 정 지 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요건 부적합
5. 사용정지일 : 2020. 08. 29. 끝.

전라북도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1-5호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안소방서장  
2021년 8월 20일

###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승헌(생년월일 : 831204-1\*\*\*\*\*)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3길 20 보석빌라 202호(인후동1가)

2. 위반내용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함.

3. 위반법규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2,108,000원(금이백십만팔천원)

5. 부과연월일 : 2021. 8. 17.

6. 납부기한 : 2021. 9. 17.

7. 납부방법 : 부안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23139)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80-1243)

# 도보이용안내

##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mailto: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